

2024. 6. 11.(화)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

# 【 목 차 】

I. 개 황 .....

II.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

1. 세입결산 .....

2. 세출결산 .....

가. 총괄 .....

나. 예산전용 .....

다. 예산이체 .....

라. 다음연도 이월 .....

III. 종합검토의견 .....

1. 세입결산 .....

2. 세출결산 .....

# I. 개 황

-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회계는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 기금은 없음.

## II.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 1. 세입결산(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P7)

-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7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69만 6천원임.

[표-1] 자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별	예산현액 ㉔	징 수 결 정 액 ㉕	수납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증 감 ㉖=㉕- ㉔
합 계	-	700	700	-	-	700
경상적세외수입	-	4	4	-	-	4
공공예금이자수입	-	4	4	-	-	4
임시적세외수입	-	696	696	-	-	696
보조금반환수입	-	387	387	-	-	387
기타수입	-	308	308	-	-	308

## 2. 세출결산(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P47~48)

###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798만 9천원으로 예산성립 결정 후 증감액은 없으며,
-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9.6%인 2억 7,586만 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12만 7천원임.

[표-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

세출 예산액 ㉑	예산성립결정후 증감액 ㉒				예산현액 ㉓=㉑+ ㉒	지출액 ㉔	집행률 ㉕/㉓	다음연도 이월액 ㉖	집행잔액 ㉗= ㉓-㉔- ㉖	불용률 ㉘/㉓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수입대체 변경						
307,989	-			-	307,989	275,862	89.6%	-	32,127	10.4%

- 집행잔액은 1,610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액 1,602만원, 예산집행잔액 1,610만 7천원임.

[표-3]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감사관	32,127	-	16,020	16,107	-

○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표-4]와 같음.

[표-4]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투명한 감사행정	54,432	51,324	3,108	5.7%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	29,700	28,843	857	2.9%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106,700	92,748	13,952	13.1%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10,000	9,625	375	3.8%
자체감사 활동을 통한 깨끗한 충북도정 구현	3,000	2,699	301	10%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12,500	9,789	2,711	21.7%
기본경비	91,657	80,834	10,823	11.8%

#### 나. 예산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 없음.

#### 다. 예산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예산이체 없음

#### 라. 다음연도 이월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 없음.

### III. 종합검토의견

#### 1. 세입결산

-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7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편성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 38만 7천원, 기타수입 30만 8천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2. 세출결산

-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억 798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6%인 2억 7,586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10.4%인 3,212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3,212만 7천 원임.
- 감사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표-4]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같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표-5]와 같이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한 1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표-5]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불용률 발생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12,500	9,789	2,711	21.7%